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6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정동만·김선교·윤영석

박성민 • 이인선 • 김성원

이달희 • 박충권 • 서지영

정연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·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시·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 ·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·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 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068호)과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「(의안번호 제606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자원시설세 분부터 적용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"원자력발전"을 "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"로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원자력발전"을 "원자력발전"을 "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원자력발전"을 "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"로, "원자력발전소가"를 "원자력발전소 및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시·군 조정교부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부과·징수한 지역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시・군 조정교부금) ① 시	제29조(시・군 조정교부금) ①
•도지사(특별시장은 제외한다.	
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	
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	
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	
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	
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	
는 금액을 관할 시·군 간의	
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	
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	
여야 한다.	
1.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	1
세·도세(화력발전· <u>원자력발</u>	<u></u> 원자력발전
<u>전</u>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	및 방사성폐기물
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	
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・도지사는 화력발전・ <u>원</u>	③ <u>원자</u>
<u>자력발전</u> 에 대한 각각의 지역	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
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	
분에 따라 관할 시·군에 각각	

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 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·군 및 제29조의2제2 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.

1. 화력발전 ·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화력발전소 ·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 · 군

2.	(생	략)
4	(생	략)

1 <u>원자력발전 및 방</u>
<u>사성폐기물</u>
원자력발전소 및「원자
력안전법」 제2조제20호에 따
른 원자력이용시설이
2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